

「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2월 2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3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3월 2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설관리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 군민의 문화생활 증진 및 공연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여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총칙(안 제1조 ~ 제4조)
 - 목적, 위치 및 시설, 업무, 관리자 등
- 관리 및 운영,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13조)
 - 휴장일, 운영시간, 이용신청, 행위 및 이용제한, 이용료, 이용료의 반환, 설비 설치의 사전승인, 관리 및 운영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2018년 준공된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을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생활 증진 및 공연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,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안 제2조에서는 체험장 위치 및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
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책임자 및 관리자, 그 업무 등에 대하여
정하였습니다.
안 제5조에 및 안 제6조에서는 휴장일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,
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이용신청, 행위 및 이용제한, 이용료
등에 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.
- 조문 및 형식은 적절하게 작성되었으며,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
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□ 수정의결 내역

제 출 안	수 정 안
<p><u>제3조(관리자 등)</u></p> <p>② 관리자 및 직원의 수·복무·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</p> <p><u>제6조(운영시간)</u></p> <p>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 다만 <u>제12조제2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9조(이용료 등)</u></p> <p>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.</p> <p>[별표]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이용료(제9조제2항 관련)</p>	<p><u>제3조(관리자 등)</u></p> <p>② 관리자 및 직원의 수·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</p> <p><u>제6조(운영시간)</u></p> <p>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용자의 이용요구가 있을 경우 (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 <삭 제></p> <p><u>제9조(이용료 등)</u></p> <p>① <삭 제></p> <p>②항을 ①항, ③항을 ②항, ④항을 ③항으로 한다.</p> <p>[별표]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이용료(제9조제1항 관련)</p>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

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군민에게 공연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 및 시설) ①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설치하는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(이하 “체험장”이라 한다)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54에 둔다.

② 체험장의 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공연장
2. 전시실
3. 회의실
4. 다목적실
5. 사무실
6. 그 밖의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

③ 체험장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음향장비
2. 조명시설
3. 빔 프로젝트
4. 냉·난방시설

제3조(관리자 등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책임자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 및 직원을 둔다.

② 관리자 및 직원의 수·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4조(업무)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문화·공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
2.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의 보존·관리·사용·수익 허가 업무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5조(휴장일)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정기 휴장일: 매주 토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
2. 임시 휴장일: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

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.

제6조(운영시간)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
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용자의 이용요구가 있을 경우(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

제7조(이용신청 등)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,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이용예정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변경신청서를 군수(제12조제2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. 이하, 제9조 및 제10조에서도 이와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,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남에게 빌려주지 못함을 미리 알려야 한다.

③ 군수는 시설 이용 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단체가 각각 신청할 경우 국가 또는

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
2. 둘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경우 문화·공연 등을 하는 군 소재 단체
3. 군 소재 관계 기관 및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4. 직장 및 동호회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사 외의 행사

제8조(행위 및 이용 제한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감염병 환자
2. 술에 취한 사람
3.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
4.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유지 및 공연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종교집회, 노동집회, 상행위 및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4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.

1. 정해진 납부기일 내에 해당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2. 이용목적 또는 내용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
3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
④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
2.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,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상 시설의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
제9조(이용료 등)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체험장 이용료(이하 “이용료”라 한다)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. 단, 군에 있는 직장 또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동호회 행사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
2. 군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
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공연 또는 행사의 주체가 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면제신청서를 이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0조(이용료의 반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전액 반환: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을 못한 경우
2. 50퍼센트 반환 : 허가사용일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1조(설비 설치의 사전승인)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

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.

제12조(관리 및 운영) ①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이용료(제9조제1항 관련)

1. 기본시설 이용료

시설명	단 위	이용료(원)
공연장	오 전 (09:00~13:00)	40,000
	오 후 (14:00~18:00)	40,000
	야 간 (19:00~23:00)	50,000
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	시간당	10,000

- 가. 토요일·공휴일은 이용료의 30퍼센트를 더함
- 나. 오전·오후·야간을 각 1회로 간주함
- 다. 이용료는 1회 기준임

2. 부대시설 이용료

구 분	단위	이용료(원)
음향장비	1회	10,000
조명시설	1회	20,000
빔 프로젝트	1회	10,000
냉·난방시설	1시간	10,000

※ 오전·오후·야간을 각 1회로 간주함

